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단50547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2. B

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이태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 이강혁

4. 주식회사 D

변론 종결2022. 12. 21.

판결 선고2023. 1. 18.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55,721원과 그 중 63,119,396원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22. 5. 7.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D 사이에 2021. 10.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게 제주시청 2021. 10. 12. 접수

제012365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0.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63,755,721원과 그 중 63,119,396원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금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 1) 원고는 2019. 8. 5.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0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22. 9.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등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책임경영의무 등)

약정인은 제1조의 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6. 제6조에서 정하는 부수의무의 준수
7.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4조(책임경영의무위반과 약정인의 책임)

① 약정인은 제2조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제1조의 보증약정으로 발생한 보증금액의 잔액을 회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하 생략)

제6조(부수의무)

① 약정인은 제2조의 책임경영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재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겠으며 관련 자료와 장부 열람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합니다.

나. 대출계약의 체결

피고 A은 같은 날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로부터 10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22. 8. 5., 이자율 금융채6개월불 + 1.524%,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대출받은 금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으면서, E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이후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2021. 12. 1. E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63,119,396원을 변제하였다(이하 위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2. 22. 현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404,100원, 가지급금은 232,225원이다.

3) 한편 원고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에 따라 책임경영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 A은 2020. 10. 3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같은 해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A은 2021. 10. 1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B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주식회사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나. 적용법조

1) 피고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던 점,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가량이 지난 2021. 7. 5.경부터 이 사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가량이 지난 2021. 12. 1.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 A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이 보유한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다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일에 가까운 2020. 6. 30.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계가 약 91억 4,400만 원, 부채 총계가 약 48억 4,500만 원, 자본 총계가 약 42억 9,900만 원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일 이후인 2020. 12. 31.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계는 약 43억 2,700만 원, 부채 총계는 약 30억 2,900만 원, 자본 총계는 약 12억 9,700만 원이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 전후로 피고 A의 자산은 부채를 현저히 초과하고 있고, 달리 피고 A의 자본의 결손이 심화됨으로써 순자산이 없어져 채무초과가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② 오히려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 A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억 8,900만

원 상당으로서 전기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훨씬 증가하였다.

③ 피고 A의 2020. 6. 30.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계의 50%에 이르는 금액이 외상매출금이지만, 피고 A이 위 외상매출금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받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자산 총계의 절반 가량이 외상매출금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A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구상금채무 이외에도 F은행에 대하여 5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F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앞서 본 2020.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부채 총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을다 제6호증의 19쪽), 위 F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포함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피고 A의 자산은 부채를 현저히 초과하고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예금계좌 잔고는 9,000만 원이 넘었다. 또한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인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국세나 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를 체납한 적이 없다.

⑥ 원고는, 피고 A의 예금잔고는 변제 또는 강제집행의 용이성이 없는 이상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A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을 신청하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고 보이는바, 예금채권의 경우 그 예금주가 언제든지 그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윤희

별지